

노건엽 연구위원, 조영현 연구위원, 이승주 연구원

## 요약

은행이나 유럽 보험회사의 경우 손실흡수능력이 강화된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2023년 시행될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 조건부자본증권을 자본으로 인정하며,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임. 조건부자본증권은 자본확충 필요성이 높은 보험회사에게 양질의 자본을 조달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발행 근거와 절차를 마련한 법안이 K-ICS 시행 이전에 시행될 필요가 있음

- 현행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RBC)는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 발행액을 자본(지급여력금액)으로 인정하며, 이에 많은 보험회사가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을 관리하고 있음
  - RBC는 신종자본증권을 자기자본<sup>1)</sup>의 25% 이내에서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고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인정하며, 후순위채는 자기자본의 50% 이내(신종자본증권 발행금액 포함)에서 보완자본으로 인정함
  - 2021년 6월 말 기준 지급여력금액 대비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잔액 비율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각각 3.7%, 3.1%이며,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각각 2.2%, 9.1%임<sup>2)</sup>
- 한편 은행의 경우,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에 비해 손실흡수능력이 강화된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 CoCo Bond)을 발행하여 자본을 확충하고 있음
  - 조건부자본증권은 예정사유(trigger event)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원금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자본증권을 지칭함
    - 부실금융회사 지정 등 예정사유 발생 시 전환 방식에 따라 ① 원리금 상환 의무가 감면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②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③ 비상장주권법인의 경우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으로 구분됨
  - 조건부자본증권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금융기관이 규제되는 경우 규제자본 보유자도 손실을 분담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은행의 자본규제인 바젤Ⅲ는 조건부자본증권만을 규제자본으로 인정함<sup>3)</sup>
    - 조건부자본증권은 2008년 금융위기 시 규제 금융을 통해 금융기관의 채권자는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은 반면 주주 및 납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비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등장함
    - 바젤Ⅲ에서 인정되는 기타기본자본(additional Tier 1; 보통주자본 이외의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Tier 2)은 모두

1)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합계액에서 영업권을 차감한 것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신종자본증권은 포함되지 않음  
 2)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참고함  
 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2. 9. 27), "바젤Ⅲ 도입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추진"

조건부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에 발행한 비조건부자본증권은 2013년부터 매년 10%p씩 자본에서 상각되어 2022년 이후 전액 불인정됨

○ 2016년 은행법 개정을 통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와 절차가 명확하게 마련<sup>4)</sup>된 이후, 국내 은행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여 총자본의 10% 이상의 규모로 보유하고 있음(〈표 1〉 참조)

- 2021년 9월 말 기준으로, KB국민은행의 경우 총자본(36.5조 원) 중 조건부자본증권(4.9조 원)이 13.4%를 차지하며, 신한은행은 15.0%이며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은 각각 10.3%와 16.9%임
- 보완자본 중 조건부자본증권 금액 비중이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후순위채권을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에 기인함

〈표 1〉 국내 은행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현황

(단위: 조 원, %)

구분	기본자본(a)			보완자본(b)			총자본(a+b)		
	조건부자본	자본금액	비율	조건부자본	자본금액	비율	조건부자본	자본금액	비율
KB국민은행	0.6	31.6	1.8	4.3	4.9	88.0	4.9	36.5	13.4
신한은행	1.3	28.3	4.6	3.6	4.3	83.5	4.9	32.6	15.0
하나은행	0.0	27.1	0.0	3.2	3.7	85.5	3.2	30.8	10.3
우리은행	1.9	23.3	8.0	2.6	3.2	81.9	4.5	26.5	16.9

자료: 각사 2021년 3분기 바젤Ⅲ 자본공시

○ 유럽의 경우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에서 조건부자본증권을 자본으로 인정하며, 이에 일부 보험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음(〈표 2〉 참조)

- 유럽의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Solvency II)는 조건부자본증권을 기본자본(Tier 1)<sup>5)</sup>의 20% 한도<sup>6)</sup>로 인정함
- Solvency II의 경과조치로 인해 아직 유럽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보험회사는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여 자본을 확충하고 있음
  - Solvency II 시행(2016년) 이전에 가용자본으로 인정된 자본증권은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경우 10년간(2025년 말) 가용자본으로 인정되고 이후 제외됨

〈표 2〉 유럽 보험회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사례

국가	보험회사	발행규모	이자율	발행일	발행등급
프랑스	SCOR	7억 5천만 달러	5.25%	2018. 3	A
네덜란드	AEGON	5억 유로	5.625%	2019. 3	BBB-
독일	Allianz	12억 5천만 달러	3.5%	2020. 11	A
프랑스	CNP	7억 달러	4.875%	2021. 3	BBB

주: 발행등급은 S&P 신용평가사 기준임

자료: 각사 홈페이지

4)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16. 3. 3),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5) Solvency II는 가용자본을 질(質)에 따라 3단계(Tier 1, 2, 3)로 구분하는데, 기본자본(Tier 1)은 요구자본의 50% 이상이어야 함

6) EU(2015. 1),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EU) 2015/35, Article 82”

- 우리나라도 2023년 시행될 보험회사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 조건부자본증권을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며,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임
  - K-ICS는 조건부자본증권을 총 요구자본<sup>7)</sup>의 15%(비조건부자본증권 포함한다)까지 기본자본으로 인정함
    - 비조건부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으로 총 요구자본의 10% 이내에서 인정되며, 이러한 방식은 국제보험자본기준(ICS)과 동일하나 SolvencyII에 비해서는 완화된 기준임
  - 한편 보험업법상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가 부재하여, 발행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한 법안<sup>8)</sup>이 7월에 발의됨
  
- 조건부자본증권은 자본확충 필요성이 높은 보험회사가 양질의 자본을 조달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발행 근거와 절차를 마련한 법안이 K-ICS 시행 이전에 시행될 필요가 있음
  - K-ICS에서는 (비조건부) 신종자본증권이라도 보험회사가 이자지급에 대해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하지 않는다면 기본자본이 아닌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므로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발행할 수요가 존재함
    -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만기는 30년 이상이나 일반적으로 발행 후 5년 또는 10년 시점에 이자율을 가산하는 조건(Step-up)이 존재하여 완전한 재량권을 보유하지 못함
  
- 한편,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은 건전성 악화 시 자본으로 전환되는 장점이 있으나 평상시 높은 이자비용이 부담될 수 있으므로, 효율적 자본관리를 위해서는 계약이전, 계약재매입, 공동재보험 등 부채조정 및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여 요구자본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금융감독당국은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에서 계약이전과 계약재매입에 대한 검토 계획<sup>9)</sup>을 밝힌 바 있으며 공동재보험은 이미 도입되어 1개사가 계약<sup>10)</sup>을 체결하였음
  - 또한 기획재정부는 만기 30년 국채 선물 상장을 검토 중<sup>11)</sup>으로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금리리스크 등 요구자본 관리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아울러 감독당국은 보험회사 자본의 질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 수용성을 고려하며 K-ICS를 개선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
    - K-ICS 3.0에서는 조건부자본증권만 총 요구자본의 15% 이내에서 기본자본으로 인정하였으나 K-ICS 4.0에서는 비조건부자본증권을 총 요구자본 15% 중 10% 이내에서 인정한 바, 향후 비조건부자본증권 인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7) 총 요구자본은 상관계수를 반영한 요구자본 합계액인 기본요구자본에서 법인세 조정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8)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대표발의, 2021. 7. 20

9)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1. 30), “공동재보험(Coinsurance) 도입방안(「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4차 회의결과)”

10) 연합뉴스(2021. 3. 31), “ABL생명-RGA재보험, 국내 ‘첫 고금리 보험계약 공동재보험’ 계약”

1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1. 10. 26), “제8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 컨퍼런스」 개최”